

#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도자 및 선수육성과 클럽선수, 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함)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은 본 협회의 수중·핀수영 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도자등록”은 본 협회의 수중·핀수영 종목 지도자로 지도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등록”은 체육회에 가입된 본 협회의 해당 동호인으로 동호인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선수”는 본 협회의 수중·핀수영 종목에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지도자”는 본 협회의 수중·핀수영 종목에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지도자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체육동호인”은 체육회에 가입된 본 협회의 수중·핀수영 종목에 동호인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7. “신인선수”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본 협회에 처음 선수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8. “선수활동”은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수중·핀수영 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도자활동”은 지도자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수중·핀수영 종목의 등록지도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체육동호인활동”은 동호인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종목의 등록 동호인으로서 각종대회 및 강습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7조에서 정한 회원단체로서 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단체로 승인된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12. “체육특기자”는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선수 가운데 해당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 중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중인 사람이며, 체육특기자 이외의 학생선수로서 본 협회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할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 적용 받는다.).

13. “정책종목”이라 함은 「교육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된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등의 종목을 말한다.

14. “유급학생선수”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중 해당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15. “재수학생”이라 함은 각급 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 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6. “등록변경”이라 함은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 된 사람이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7.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8. “클럽선수”라 함은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경기부 이외의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19. “동호인선수”라 함은 일반인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해당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0. “체육동호인”은 성인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1. “청소년체육동호인”은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해당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동호인부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2. “지도자·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도자·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규정제정)** ① 본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수중·핀수영 종목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본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으로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본 협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회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 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과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등록 및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외국 국적자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에 대하여는 세계수중연맹(CMAS)규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체육회가 인정하는 종목만 해당한다.

## 제 2 장 지도자, 선수 및 체육동호인 등록

**제 5 조(선수등록)** ①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② 학생이외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반부(실업팀) 및 제9조에 준하여 각각 선수등록을 한다.

**제 6 조(지도자등록)** ①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지도자는 본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 일반부(실업팀)소속으로 지도자등록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본 협회 ‘상벌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7조(체육동호인등록)** ① 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 협회의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청소년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 협회의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선수등록의 예외)** ① 고등학교 재학 중 선수등록을 하고 선수활동을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업팀으로 우선 재직 중에 또는 그 이후에 대학교(주·야간 포함)에 진학한 사람은 본 협회의 결정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부(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사람은 재직 중에 대학 소속으로 등록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7조제2항제7호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직장운동부 소속만을 말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카드 등 근로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제9조(선수등록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부별 등록연령(단,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초등부 (13세이하)
2. 중학부 (16세이하)
3. 고등부 (19세이하)
4. 대학부
5. 일반부
6. 동호인부

② 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소관부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③ 유급 선수 및 연령 초과 해당자의 연령은 제1항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제9조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령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연령이 초과된 선수는 시도경기단체에 등록신

청서 제출 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등록 시기)** ① 등록기간은 본 협회가 결정하되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한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 체육동호인은 예외로 한다.

② 추가등록은 본 협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의 등록시기와 회수는 본 협회가 결정한다.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선수까지 유효하다.

④ 지도자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지도자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된 지도자까지 유효하다.

**제12조(선수등록 자격)** ①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 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 사람(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한 사람을 포함하여 총 12학기까지 인정한다.)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대학원 재학생 포함)

4. 기타 본 협회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에 소속된 사람

②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실업팀·동호인선수·클럽선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일반 실업팀에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사람

2. 동호인선수 또는 클럽선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여 3개월 이상 소속을 정한 사람

③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선수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서의 관리)** ①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정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 받은 실업팀에서 취업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실업팀의 확인을 받아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취업하기로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 협회가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본인의 서명 날인 후 지급한다.

③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회는 이를 해당 팀과 기타 관련 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등록 자격의 제한)**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② 학교 팀의 단체경기에 있어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동일재단 또는 동일 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재학 중 휴학 중인 사람과 해외유학생은 해당기간 동안 해당 학교급 또는 일반부 선수로 등록 할 수 없다.

④ 군에 복무중인 사람은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공익근무요원은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나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소속선수는 예외로 한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8조제1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

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에서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⑦ 동일인이 **제9조**에서 정한 각 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회원종목단체에 중복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회원종목단체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⑧ 동 규정과 본 협회의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록절차)** ① 체육회가 운영하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 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를 시행하며 시·도체육회는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의 예비심사기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에서 체육동호인은 본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카드를 포함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3. 본 협회 시·도수중·핀수영협회 및 시·군·구체육회 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 란에 확인하여 시·도체육회에 보고한다.

4.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에서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1차 심사 후 경유 란에 확인하여, 본 협회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5. 본 협회는 지도자·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에 확인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

②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은 등록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본 협회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마감일로부터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을 확정하여 2주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등록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국가대표정보 등을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체육회 회규에 따른다.

**제16조(등록지)** ①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은 해당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본 협회 시·도수중·핀수영협회 및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교팀에서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개인종목은 행정구역 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별도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혼성하여 등록하되,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한다.

③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학교팀은 1회에 한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정당하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의 경우

2.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생선수가 졸업 후 취업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의 스포츠평정위원회가 승인한 사람

3.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 소속으로의 복귀 경우

4. 소속단체의 해체 및 실업선수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5.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가 없는 시·도의 학생이 정책종목에 한정하여 타 시·도 체육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허가받은 경우

6. 동호인 선수는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희망에 따라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변경까지는 전 소속단체 소속으로 한다.

7. 야간 대학선수의 경우 재학 중 실업팀 선수로 이적하거나, 실업팀 선수가 재직 중 야간 대학선수로 이적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 할 수 있다.

③ 동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선수구제)**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본 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

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할 경우,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 협회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 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

### **제 3 장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활동**

**제19조(지도자활동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지도자등록 절차에 따라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수중·핀수영 종목의 지도자로서 지도자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지도자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지도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수중·핀수영종목의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선수활동의 제한)** ① 본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 협회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재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3월말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선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부터 최소 만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⑤대학에 합격한 선수가 그 대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으로 등록한 경우 만 2년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본 협회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⑦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⑧ 제15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본 협회의 최종 확정이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 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그 연도에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관내 학교의 체

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사람

2.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사람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거나 본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사람

②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유급 또는 재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부상,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본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으로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단, 본 협회가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

③ 학생선수 이외의 신분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상, 질병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병·의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으로 입원 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 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2. 소속단체의 해체

3. 실업선수가 소속팀과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선수등록을 변경한 사람(단, 본 협회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기간은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4.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 소속으로 복귀 시 본 협회가 정한 선수등록 기한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

**제23조(선수 실적발급)** 선수 실적발급은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지침에 따른다.

## 제 4 장 징계조치

**제24조(제한조치)** ①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정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동호인 포함) 금지(보호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다)

2. 관련된 임직원(단장,감독,코치 포함) :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본 협회의 활동 자격정지

3. 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의뢰(단, 감독, 코치는 제2호 조치 병행)

② 징계만료 이후 및 징계해제 후 재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③ 체육회 본 협회는 전항에 의거, 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로 그 자격을 정지한다.

**제25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체육회 또는 본 협회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본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시킬 수 없다.

④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 부 칙

**1. (경과사항)** ① 본 규정은 199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제정에 따라 본 협회 선수등록 규정(90. 1. 1재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③이 개정 지침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④이 규정은 2005. 2. 25 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⑤이 규정은 2006. 6. 1 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⑥이 규정은 2007. 3. 14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⑦이 규정은 2007. 6. 20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 ⑧이 규정은 2008. 6. 23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 ⑨이 규정은 2008. 11. 26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 ⑩이 규정은 2009. 10. 8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 ⑪이 규정은 2009. 12. 22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 ⑫이 규정은 2010. 3. 20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 ⑬이 규정은 2014. 1. 9 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 ⑭이 규정은 2014. 8. 27 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 ⑮이 규정은 2016. 3. 29 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2. (보칙 및 시행일)** ①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대한체육회의 선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